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3449
------	------

2026. 3. 1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년 2월 9일, 홍국표 의원(찬성자 21명)

2. 회부일자 : 2026년 2월 12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홍국표 의원)

1. 제안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소자본 창업의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임.
-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상생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202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근거 규정과 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지원내용, 선정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추진근거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됨.

2. 개정안의 입법 배경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¹⁾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면서,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인 경우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이하 “시장”),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사,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전국의 가맹본부는 2024년도말 기준 총 8,802개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개수는 43개 증가(8,759개→8,802개)하였으나 증감률은 6.5% 감소(7%→0.5%)하였는바,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물가·고금리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
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
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관 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호, 2020. 1. 2. 제정) 제2조(정보공개서 등록기관) 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경우: 부산광역시장

로 인한 내수경기 회복 지연 및 자영업 경영여건 악화에 따라 가맹사업의 성장 추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하였음.²⁾

< 연도별 가맹본부, ^{주1)} 영업표지, ^{주2)} 가맹점 ^{주3)} 증감 추이 >

(단위 : 개, %, 명, 십억원)

구분		2020년도말	2021년도말	2022년도말	2023년도말	2024년도말	
전국	가맹본부	개수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5,602 (8.3)	7,342 (31.1)	8,183 (11.5)	8,759 (7.0)	8,802 (0.5)
	영업표지 (브랜드)	개수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7,094 (11.7)	11,218 (58.1)	11,844 (5.6)	12,429 (4.9)	12,377 (△0.4)
	가맹점	개수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234,872 (9.1)	260,240 (10.8)	286,314 (10.0)	301,885 (5.4)	313,880 (4.0)
		종사자 수	802,418	834,174	942,705	1,016,364	1,038,462
		연간 매출액	74,260	84,693	100,324	109,058	117,779
	서울	가맹본부	개수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1,996 (5.1)	2,739 (37.2)	2,699 (△1.5)	2,805 (3.9)
영업표지 (브랜드)		개수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2,654 (7.6)	4,534 (70.8)	4,326 (△4.6)	4,472 (3.4)	4,403 (△1.5)
가맹점		개수 (전년도말 대비 증감률)	43,207 (6.4)	45,664 (5.7)	48,628 (6.5)	50,533 (3.9)	52,855 (4.6)
		종사자 수	169,678	166,360	180,318	195,247	200,796
		연간 매출액	15,543	17,222	20,112	22,040	23,593

※ 주1)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예: 롯데리아에스(주), 본아이에프(주), 원앤원(주) 등)를 의미하며, 그 개수는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토대로 파악된 것임.

주2) ‘영업표지(브랜드)’는 “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는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예: 롯데리아, 본죽&비빔밥, 본죽, 본도시락, 원할머니 등)을 의미하며, 하나의 가맹본부 [예: 본아이에프(주)]가 복수의 영업표지(예: 본죽&비빔밥, 본죽, 본도시락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음. 영업표지 개수도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을 토대로 파악된 것임.

주3) ‘가맹점’은 국가데이터처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가맹점 명부를 토대로 별도 조사 및 가공을 거쳐 집계·발표한 것으로서 ▶교육서비스업, 콜택시, 군부대 내 프랜차이즈 사업체는 제외된 것이며, ▶2024년도말의 수치는 잠정치임(국가데이터처는 2024년도말의 확정된 수치를 2026년 5월 제공할 예정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025. 4. 29, p.5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가맹점 수 늘고 연매출도 증가…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2025. 7. 1, p.2

국가데이터처, 프랜차이즈조사 중 ‘프랜차이즈 통계(가맹점)’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4년 프랜차이즈(가맹점) 통계 결과(잠정)”, 2025. 12. 24, p.9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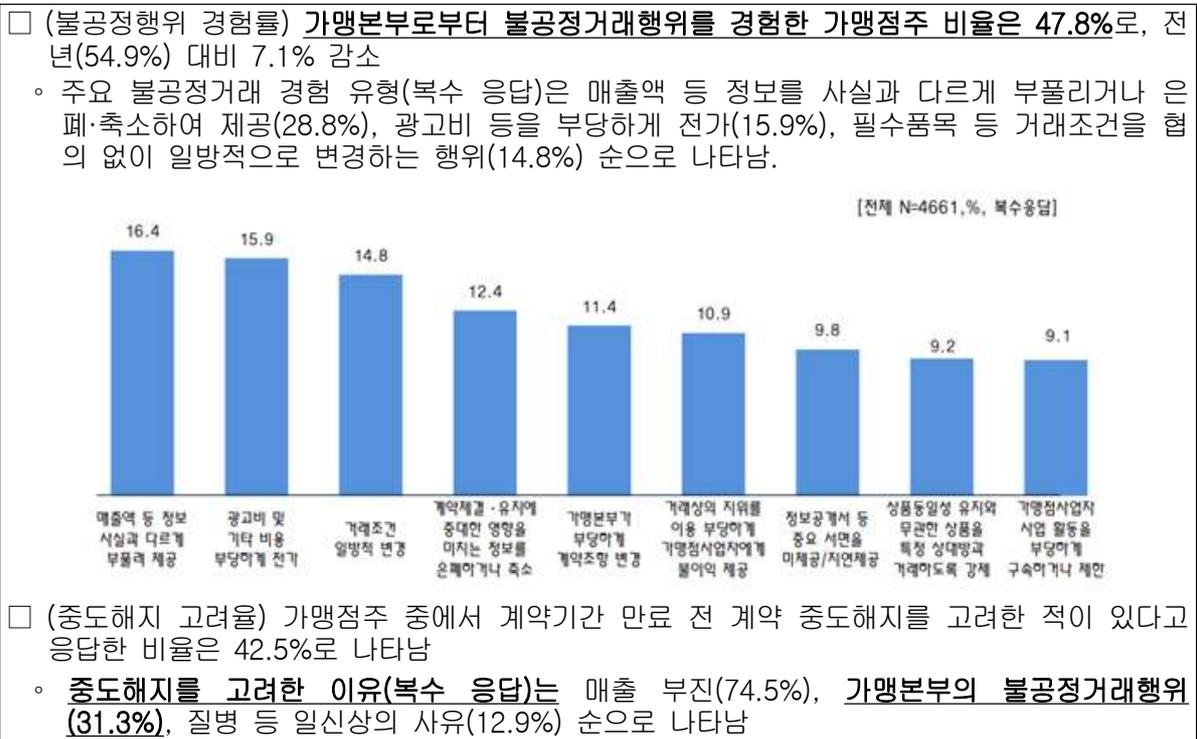
- 특히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있어 시장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2024년도말 기준 2,754개로, 전년도보다 1.8%(51개) 감소하였음.³⁾

2)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025. 4. 29, p.1

3) 서울시는 가맹점이 없어 실제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가맹본부를 등록취소한 것도 2024년도 가맹본부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고 발표함.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가맹점 수 늘고 연매출도 증가…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2025. 7. 1, p.2

- 한편 가맹점의 개수는 전국과 서울시 관내 모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와 연간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가맹사업이 소자본⁴⁾ 창업의 주요 수단이자 비교적 안정적인⁵⁾ 수익 창출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2025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의 비율은 47.8%에 달하며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를 고려하는 이유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가 2번째로 큰 비중(31.3%)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중 불공정행위 경험률 및 중도해지 고려율 >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5. 12. 30, [붙임] 2025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p.13~15

4)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 창업에는 평균 1억 1,300만원이 소요됨. 업종별로는 서비스 업종은 평균 1억 7,680만원, 도소매업은 평균 1억 4,320만원, 외식업은 평균 9,480만원이 소요됨.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가맹점 수 늘고 연매출도 증가…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 발표”, 2025. 7. 1, p.6

5)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변동과 비교할 때 가맹점 매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 발표”, 2025. 4. 29, p.2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외적으로는 브랜드 가치 상승, 매출 증대 등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면서도, 대내적으로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어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거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가맹사업 구조의 특성(이중성) >

□ 가맹사업 구조의 이중성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Franchisor)와 가맹점사업자(Franchisee)가 계약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모델을 확산하는 구조로 운영됨. 본부는 브랜드, 운영 시스템, 교육 및 공급체계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이를 기반으로 독립적인 사업체로 영업을 수행함.
 - ▶ 이러한 구조는 일정한 품질과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창업 리스크를 바탕으로 자영업 진입 장벽을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구조적 긴장을 내포하고 있음.
- **(협력과 종속의 이중구조)** 본부와 가맹점은 공동의 브랜드 가치 상승이라는 목표하에 협력하나, 브랜드 의존도 및 공급량 통제를 통해 가맹점이 본부에 종속될 위험이 상존함.
- **(정보 비대칭성)** 수익구조, 예상매출, 운영비용 등 주요 경영정보가 본부에 집중되어 있어, 가맹점은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함.
- **(거래 불균형)** 필수품목 지정, 광고비 분담 요구, 계약 갱신 거절 등에서 본부의 우월적 지위가 계약상 분쟁과 경영 리스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 따라서 가맹사업은 자율성과 종속성, 독립성과 통제라는 상반된 성격이 병존하는 복합적 사업모델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를 전제로 한 제도설계 및 정책개입이 필요함.

※ 출처 : (주)입법정책연구원, “서울형 상생프랜차이즈 지표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25. 7. p.30

-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해 사업 기반 그 자체를 조성하거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지원하는 것⁶⁾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⁷⁾

6) 이와 관련된 법률이 산업통상부 소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임. 동 법률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가맹사업자”라고 통칭하고, 정부로 하여금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전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10조, 제14조).

7) 이와 관련된 법률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법”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편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와 상생하는 문화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⁸⁾ 지난 2025년 도부터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현황 >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추진배경

- 불경기로 폐업이 증가하는 상황에도 비교적 접근성이 높고 진입장벽이 낮은 프랜차이즈를 통한 가맹점사업자의 꾸준한 창업 시도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시장 점유율 및 매출 증대 등에는 협력하는 관계이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관행 및 분쟁 지속

II. '25년 추진결과

□ 추진실적

-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정립 및 평가지표 개발('25. 4.~7.)**
 - ▶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법규 준수 노력과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통하여 가맹점사업자 보호 및 가맹사업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 ▶ 평가지표 : 공정거래 준수, 지속 가능성, 소통·협력 노력, 지역경제 연계
-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공모·선정('25. 8.~11.)**
 - ▶ 총 24개 가맹본부 신청 (대형 14개, 중소형 10개)
 - ▶ 1차 서면 및 2차 현장평가 실시 (가맹·법률·회계 등 전문가 평가)
 - ▶ **8개 우수 가맹본부 선정**
 - (대형) 롯데리아, 본죽&비빔밥, 원할머니보쌈·족발, 리안헤어, 더카페, 가마치통닭
 - (중소형) 고반식당, 육회야문연어
- **상생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사업자(100명) 대상 인센티브 제공('25. 12.~'26. 3.)**
 - ▶ **(교육지원) 가맹점사업자 컨설팅(회계, 노무, 경영) 및 교육(CS, 위생 등)**
 - ▶ **(홍보지원) 가맹점사업자 SNS·블로그 리뷰 지원, 마케팅 심화 코칭**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공모기간(1개월)·평가기간(1개월) 부족 및 대형 가맹본부 위주 선정
 - (개선방안) 공모기간(2개월)·평가기간(3개월) 확보, 중소형 가맹본부 선정 확대
- 가맹본부 중심의 평가로 가맹점 실제 체감도 평가지표 미흡
 - (개선방안) 가맹점사업자 대상 가맹본부 상생활동 만족도 설문조사 추가

III. '26년 추진계획

1.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선정

□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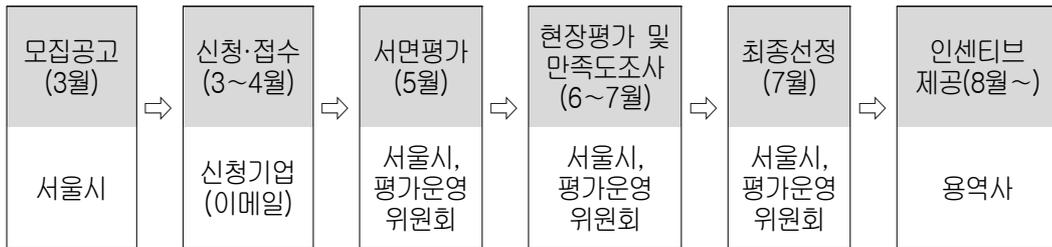
- 추진기간 : 2026. 3월~7월 (5개월)
- 추진방법 : 서울시 직접수행(공고·접수) 및 **평가운영위원회 운영(서면·현장조사)**
- 소요예산(안) : 2천만원

8)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3431 (2025. 2. 20.)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계획”

- 평가·선정방법 : 서면·현장 평가 후 평가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지표 주요내용 : '25년 평가지표(공정거래 준수, 지속 가능성, 소통·협력 노력, 지역경제 연계)에 가맹점 만족도조사 추가

□ 세부계획

- 신청대상 : 1년 이상 영업한 가맹본부 중 가맹점 10개 이상인 업체
- 선정규모 : 10개 가맹본부 (시상 및 인증마크 제공)
- 선정기준 : 기업별 평가위원 평균 점수의 고득점순
-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 10인 내외
 - ▶ 가맹거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 세부절차



2. 상생 프랜차이즈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26. 8월~11월 (4개월)
- 추진방법 : 용역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과업 : 상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대상 인센티브 제공
- 소요예산(안) : 1억원 (1천만원 × 10개 가맹본부)

□ 세부계획

- 인센티브(안) : 1개 가맹본부 당 1천만원 상당 혜택 제공
 - ▶ (교육지원) 가맹점사업자 컨설팅(회계, 노무, 경영) 및 교육(CS, 위생 등)
 - ▶ (홍보지원) 가맹점사업자 SNS·블로그 리뷰 지원, 마케팅 심화 코칭
- ※ 가맹점 설문조사 통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신규 도출

IV.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억 2천만원

□ 향후일정

- 상생 프랜차이즈 공모 및 평가 : '26. 3월~7월
- 우수 상생 프랜차이즈 인센티브 제공 : '26. 8월~11월
-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 '26. 12월

※ 출처 : 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2832 (2026. 2. 4.)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계획”

- 동 사업은 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하여, 해당 가맹본부와 그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지원)하는 사업임.

- 그간의 사업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시행 첫해인 2025년도에는 4월부터 7월까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정립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한 후, 8월부터 11월까지 공모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이하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8개 가맹본부를 선정하였고, 12월부터는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10개 가맹본부를 선정·지원할 계획임.
- 동 사업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를 선정·발표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미참여 가맹본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산업 전반에 모범사례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가맹본부의 가맹점 친화적 노력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서울시는 동 사업을 현행 법령과 조례의 3개 조문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 중 ▶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고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는 시장이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음.
-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경우에도 소상공인은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와 일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상생하는 문화가 확립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동 사업의 추진근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음.⁹⁾

9) 단순히 ‘가맹점사업자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이기도 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사업 추진근거로 삼는다면, 소상공인 개념에 수렴될 수 없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는 동 사업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함. 동 사업이 대상자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경영 안정 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바람직한 거래질서와 관계가 구축된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라면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추진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경제 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3. 공동화 또는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
4.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5.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6.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식품위생법」상 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소상공인 포함)
7.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 7의2.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및 구제
- 7의3.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역량강화 교육
8.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지원
9.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심의회 등을 설치·운영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¹⁰⁾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에 그 근거가 필요하나, 동 사업의 경우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경우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음.

10)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와 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임.

3. 개정안에 대한 검토

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선정취소 등(안 제19조)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이동시키고 안 제19조와 안 제20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 중 안 제19조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의 직접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한 것임.
- 조항별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하는 문화의 조성·확산에 기여한 가맹본부를 평가와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p>제19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선정취소 등)</p> <p>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 중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을 것 2.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 이와 관련하여 가맹사업의 운영 형태로는 ▶가맹본부와 그에 속한 가맹점이 모두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¹¹⁾ ▶가맹본부는 다른 지역에 있지만 가맹점은 서울시 관내에 있는 경우,¹²⁾ ▶가맹본부는 서울시 관내에 있지만 가맹점은 다른 지역에만 있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가맹사업이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음.
- 그러나 모든 가맹점이 다른 지역에 있거나 서울시 관내에서 극소수의 가맹점만 단기간에 걸쳐 운영한 가맹본부는 지역적 관련성이 적어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안 제19조제1항제2호를 통해 서울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가 일정 범위 이상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안 제19조제2항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에 속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인증기간 동안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19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선정 취소 등) ②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서 및 인증패 제공

11) 2025년도에 선정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8개) 중 ▶롯데지알에스(주)(영업표지: 롯데리아), ▶본아이에프(주)(영업표지: 본죽&비빔밥), ▶미창조(주)(영업표지: 리안), ▶(주)티지와이(영업표지: 가마치통닭), ▶(주)고반홀딩스(영업표지: 고반식당)를 포함한 5개는 가맹본부의 주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서울시 관내에서 가맹점도 운영하는 사례임.

12) 2025년도에 선정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8개) 중 ▶원앤원(주)(영업표지: 원할머니), ▶(주)이랜드이츠(영업표지: 더카페), ▶(주)서영에프앤비(영업표지: 육회야문연어)를 포함한 3개는 가맹본부의 주 사무소는 다른 지역에 소재하지만, 서울시 관내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례임.

현행	개정안
	<u>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홍보</u> <u>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u> <u>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노무·경영 컨설팅</u> <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2025년도에 최초로 선정하여 지원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증서·인증패 제공, 홍보 및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제5호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신규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와 같이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가 도입 취지대로 법규를 준수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확산하는 제도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매년 일정 수의 가맹본부를 모범사례로 선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 소속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고 다른 가맹본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과 연계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부서(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안 제19조제3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요건이나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9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선정 취소 등)</u> <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형 상생 프랜차</u>

현행	개정안
	<p>이므로 선정된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폐업,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 안 제19조제4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기 선정된 가맹본부가 선정 요건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제도 평가 및 확산방안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19조제5항은 선정 요건 중 ‘서울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 및 관내 가맹점 수’ 와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인증기간’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이는 ▶ ‘서울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 및 관내 가맹점 수’ 와 ‘인증기간’ 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하긴 하지만,¹³⁾ 사업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가맹사업 시장 현황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운영실태 등에 따라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도록 함으로

13) 참고로 2025년도에는 모집공고를 통해 공고일 기준 ‘가맹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가맹점 수가 1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으며, 최종 선정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2년의 인증기간(2025. 12. 15.~2027. 12. 14.)을 부여하였음.

써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한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시장이 보완·구체화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안 제20조)

- 안 제20조제1항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및 선정취소, 제도에 대한 평가 및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두되, 이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p>제20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p> <p>①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이하 “평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평가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평가 및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¹⁴⁾은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거나 ▶위원회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될 것이 예상되거나 ▶안건 발생 후 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4)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따라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사업은 2025년도와 2026년도에 연간 1회씩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취소 등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안건이 급격히 증가하여 개최회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평가운영위원회 회의는 연간 4회 미만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관련 조례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 안 제20조제2항부터 안 제20조제5항까지는 평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문제는 없음.

안 제20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

-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가맹거래사·변호사·세무사·기업인 등 가맹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⑤ 평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449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2월 09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영옥,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신복자, 윤종복,
이성배, 이종환, 임춘대,
정지웅, 최민규, 허 · 훈
의원(21명)

1. 제안이유

- 고물가·고금리로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소자본 창업의 대표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임.
- 서울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공정한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상생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고자, 법규를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맹본부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를 202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또한 서울시는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근거 규정과 평가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지원내용, 선정취소 및 운영실태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9조와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 중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 사업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을 것
2.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맹본부에 대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서 및 인증패 제공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홍보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노무·경영 컨설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 폐업,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④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⑤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인증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이하 “평가운영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다만, 평가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1.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의 평가 및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가맹거래사·변호사·세무사·기업인 등 가맹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평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19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선정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맹본부 중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점사업자와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확산하는 데 이바지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한 평가와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였을 것 2.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 수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p><신 설></p>	<p>②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와 그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맹본부에 대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인증서 및 인증패 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u>공</u></p> <p><u>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홍보</u></p> <p><u>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u></p> <p><u>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회계·노무·경영 컨설팅</u></p> <p><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른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p> <p><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u></p> <p><u>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u></p> <p><u>3. 폐업, 부도, 휴업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u></p> <p><u>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u></p> <p><u>5. 그 밖에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u></p>

현행	개정안
<p data-bbox="576 427 746 472"><신설></p>	<p data-bbox="837 230 1401 405"><u>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u></p> <p data-bbox="837 427 1401 607">④ <u>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p>
<p data-bbox="576 633 746 678"><신설></p>	<p data-bbox="837 633 1401 1010">⑤ <u>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 요건 중 서울특별시에서 가맹점을 운영한 기간과 관내 가맹점수,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인증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p>
<p data-bbox="576 1048 746 1093"><신설></p>	<p data-bbox="804 1048 1401 1693"><u>제20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위원회(이하 “평가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평가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u></p> <ol data-bbox="837 1715 1401 2022"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837 1715 1401 1827">1. <u>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에 관한 사항</u> <li data-bbox="837 1850 1401 1962">2. <u>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의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u> <li data-bbox="837 1984 1401 2022">3. <u>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제도</u>

현행	개정안
	<p><u>의 평가 및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u></p> <p><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u></p> <p><u>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④ 위원은 가맹거래사·변호사·세무사·기업인 등 가맹사업에 대해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u></p> <p><u>⑤ 평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u>제19조(협력체계 구축) (생략)</u></p>	<p><u>제21조(협력체계 구축) (현행과 같음)</u></p>
<p><u>제20조(예산지원) (생략)</u></p>	<p><u>제22조(예산지원) (현행과 같음)</u></p>
<p><u>제21조(시행규칙) (생략)</u></p>	<p><u>제2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p>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0조(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평가운영 위원회)에 따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서울시 관련부서(민생노동국 공정경제과) 문의결과 기추진사업¹⁾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주 무 관	손 제 승

☎ 02-2180-7935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경제실 2026년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 우수 상생 프랜차이즈 선정 : 120,000천원
⇒ 참고로 서울시 관련부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서 평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수당(연 20,000천원 편성) 정도이며, 신청건수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이므로, 향후 신청건수가 늘어날 경우 현재 편성된 금액보다 소요되는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Ex. 30,000천원)됨